

송운초등학교 병설 유치원 규칙

학칙제정 2009.03.01.

학칙개정 2010.03.03.

학칙개정 2012.04.02.

학칙개정 2015.03.01.

학칙개정 2023.02.16.

학칙개정 2023.11.09.

제1 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유치원 규칙(이하 '학칙' 이라 한다)은 본원에서 유아교육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유아교육을 실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본원은 송운초등학교병설유치원이라 한다.

제3조 (위치)

본원은 경기도 시흥시 옥구천동로 433-25에 위치한다.

제 2 장 교육 연한 · 학기 및 휴업일

제4조 (교육 연한)

본원은 교육 연한을 1년으로 한다. 단, 기타 관련 법령에 따라 원장이 수료한 원아에게 재입학을 허락할 수 있다.

제5조 (학기)

본원의 학기는 매 학년 도를 두 학기로 나눈다. 제1학기는 3월 1일부터 유치원의 수업일수, 휴업일 및 교육과정 운영을 고려하여 유치원의 장이 정한 날까지, 제2학기는 제1학기 종료일 다음 날부터 다음 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

제6조 (휴업일)

- ① 유치원 휴업일은 원장이 매 학년도가 시작되기 전에 유치원운영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거쳐 정하며, 토요일, 관공서의 공휴일 및 여름 · 겨울 휴가가 포함 되어야 한다.
- ② 원장은 비상 재해나 그 밖의 급박한 사정이 발생하였을 때 임시 휴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원장은 바로 담당 교육청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원장은 유치원운영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거쳐 토요일 또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유치원 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
- ④ 원장은 제3항에 따라 유치원 행사가 개최되는 날을 수업일수에 포함할 수있으며, 그 수업일수만큼 제1항에 따른 휴업일을 별도로 정해야 한다.

제3장 학급 편제 및 원아 정원

제7조 (학급편제)

본원의 학급 수는 일반학급 1학급, 특수학급 1학급으로 하되, 특수학급은 시흥교육지원청 특수교육 운영위원회 배치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제8조 (원아 정원)

본원의 원아 정원은 경기도 교육감이 정하는 유치원 원아 수용 계획의 학급당 정원 기준에 따른다.

제4장 교육내용

제9조 (교육내용)

- ① 본원의 교육내용은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고시한 국가 수준 교육과정을 바탕으로 하고, 교육감이 제시한 ‘경기도 유치원교육과정 편성·운영지침’ 및 경기도 시흥교육청의 강조점을 반영하여 유치원 실정에 맞게 편성한다.
- ② 유치원장은 매 학년 초 교육과정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필요한 조직을 구성하여야 한다.

제5장 수업일수 및 수업 운영 방법

제10조 (수업일수)

반일제의 수업일수는 주 5일제로 하며 매 학년 180일 이상으로 한다.

제11조 (수업 운영 방법)

- ① 수업 운영 방법은 반일제(4시간)로 한다.
- ② 유치원장은 교육상 필요한 때에는 인근 유치원과 협동 교육을 시행하거나 학급을 달리하는 원아를 병합하여 수업할 수 있다
- ③ 유치원장은 정보통신 매체를 이용하는 수업을 운영할 수 있다.
- ④ 유치원의 장은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원외 체험 학습을 할 수 있으며, 이때 유치원장은 원외 체험 학습 기간을 수업으로 인정한다.

제6장 입학 · 재입학 · 편입학 · 전학 · 휴학 · 퇴학 · 수료 및 졸업

제12조 (입학 자격 및 방법)

- ① 본원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일반학급 만 5세부터 초등학교 취학 전까지의 유아로 한다.
- ② 신입 유아 선발은 유치원입학관리시스템인 ‘처음 학교로’를 통해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에 의해 운영하며 당해 연도 경기도교육청 유아 모집·선발계획에 의거 하여 운영한다.

제13조 (재입학·편입학·전학·휴학)

- ① 재입학 · 편입학 · 전학 · 휴학의 시기는 유치원의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수시로 할 수 있다.
- ② 본원에 전학하려는 자는 재학한 유치원의 생활기록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③ 본원에서 다른 유치원으로 전학하고자 할 때는 생활기록부를 송부한다.
- ④ 질병 등 사유에 의해 휴학을 희망하면 원장은 휴원서를 받아 일정 기간 교육과정 이수를 중단할 것을 허가할 수 있다.

제14조 (퇴학)

원아가 다음 각호의 해당할 때는 퇴학을 명할 수 있다.

- ①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이 일정하지 않은 자
- ② 질병 및 기타 사유로 타 원아의 교육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된 자

제15조 (수료 및 졸업)

- ① 유치원의 장은 원아의 출석 일수와 교육과정의 이수정도 등을 고려하여 수료 또는 졸업을 인정하고 졸업장을 수여한다.
- ② 수료에 필요한 출석 일수는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수업일수의 3분의 2 이상으로 한다.

제7장 수업료 · 입학금 그 밖의 비용징수

제16조 (수업료·입학금)

본원의 원아로부터 징수하는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하여는 교육부령 및 경기도학교 수업료 입학금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

제17조 (그 밖의 비용징수)

수업료 및 입학금을 제외한 그 밖의 비용징수는 교육과정 운영을 위하여 유치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 · 징수한다.

제8장 교직원 관리 규정

제18조 (연수·연찬)

교육과정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교재 연구, 수업 연구, 교직원 연수 등은 유치원 교육계획에 의한다.

제19조 (교직원 상벌)

교직원의 상벌에 관한 사항은 원내 교직원 상벌 규정에 따른다.

제20조 (근무 규정)

- ① 교직원의 근무 시간은 08:40 ~ 16:40까지를 원칙으로 하되, 방과 후 과정 운영에 따른 근무 시간은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 ② 교직원의 복장은 품위 유지를 위하여 단정한 복장을 착용하고, 교육적으로 필요한 경우 그에 맞는 복장을 착용하여야 한다.
- ③ 기타 사항은 유치원 교육계획, 공무원 복무규정 및 관련 법령에 따른다.

제9장 유치원 규칙의 개정 절차

제21조 (유치원 규칙 개정 절차)

- ① 규칙은 원장의 제안에 따라 유치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장의 인가를 받아 규칙을 개정한다.
- ② 제1항의 규칙 개정은 학교(유치원)장의 발의에 의하여 제안되며, 학교(유치원) 운영위원회 심의는 재적 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 ③ 제안된 규칙 개정안은 이를 20일 이상 유치원 홈페이지 및 게시판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22조 (시행규칙)

기타 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유치원의 장이 정한다.

제10장 생활지도 및 교육활동 보호

제23조(생활지도 범위와 방식)

- ① 원장과 교원은 각호의 사항에 대해 유아를 생활지도 할 수 있다.
1. 교원의 수업권과 타인의 학습권에 영향을 주는 행위
 2. 유치원의 학급 분위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물품의 소지·사용
 3. 자신 또는 타인의 건강에 영향을 주는 행위
 4. 건전한 성장과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
 5. 자신 또는 타인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행위
 6. 전인적 성장을 위한 품성 및 예절
 7. 언어 사용 등 의사소통 행위
 8. 유아 간의 갈등 조정 및 관계 개선
 9. 특수교육대상자와 다문화 유아에 대한 인식 및 태도
 10. 그 밖에 원장 또는 교원의 전문적 판단으로 생활지도가 필요하다고 여기는 행위

【제23조 제1항 10호 그밖에 생활지도가 필요한 사항】

	요건	지도 방법
1	교육과정 운영시간 미준수 (예) 반복적 지각	· 유아나 보호자에게 조언, 상담 시행
2	유치원 출입에 관한 사항 (예)하원 후 재 등원(귀가 동의서와 다른 경우)	· 유아나 보호자에게 유치원 출입에 관한 규정 준수에 대한 조언, 상담 시행
3	시설 이용 (예) 타 학교급 시설 이용 시 안전 문제 등	· 유아 및 보호자 상담 · 안전 및 질서 유지 저해할 때 주의
4	교재교구, 시설 등이 파손될 정도 위험한 행위 (예) 생활지도가 있었음에도 교재·교구 또는 시설 파손	· 유아에게 주의, 훈육 시행 · 유아와 보호자 상담 · 파손된 교재 교구나 시설에 대한 손해 배상 청구
5	존중과 배려의 유치원 문화 조성을 방해하는 행위 (예) 타인을 신체적, 정신적으로 불쾌하게 하는 언행 또는 조장하는 행위 보호자가 교원에게 불쾌한 농담, 폭언 등을 하는 행위 (예) 보호자가 교원의 수업 등을 녹음 또는 녹화하여 당사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공유하는 행위	· 유아 및 보호자 상담, 주의 · 지속될 때 교육활동 침해로 판단하여 조치

② 위 사항에 대해 「유치원 교원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고시」 제2장 제5조부터 제8조에 의거 유

아에게 조언, 상담, 주의, 훈육할 수 있다. 보호자는 원장과 교원의 전문적 판단에 따른 생활지도를 존중하고 교육활동이 이루어지도록 협력해야 한다.

③ 유치원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물품을 유아로부터 분리하여 보관할 수 있다.

1. 유아 및 교직원의 안전과 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물품
2. 관련 법령에 따라 유아에게 판매될 수 없는 물품
3. 기타 교원 또는 원장 판단으로 교육활동에 피해를 주는 물품

【제23조 제3항 3호에 분리보관 가능 물품】

요건		보관기간	분리 장소	처리 방법
1	유아 및 교직원의 안전과 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물품 (예> 날카로운 도구, 장난감 칼, 총, 공구, 레이저 포인터, 화학약품 등)	활동 시간	교무실 등 원장이 지정하는 장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분리보관 사유를 알림 · 보호자에게 알리고, 요청하는 경우 보관기간 내 보호자에게 되돌려줌 ※ 보호자가 반환받을 의사가 없는 경우 또는 보관기간 경과 후 2일이 지나도 반환받지 않는 경우 폐기 조치
2	기타 규칙으로 정하여 소지를 금지한 물품 (예> 고가의 물품, 녹음기, 휴대용 전자기기(스마트 워치, 태블릿 PC, 스마트폰 등))	활동 시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분리보관 사유를 알림 - 등원하면 전자기기를 가방에 넣어 보관

제24조(특수교육대상자의 생활지도)

- ① 원장과 교원은 특수교육대상자의 특성을 고려한 생활지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 ② 원장은 「유아교육법」 제15조 제2항에 따라 통합교육을 시행하는 경우 교직원 대상 장애 이해 및 특수교육 관련 연수, 통합학급의 유아 수 감축, 특수교육 교원과 통합학급 담당 교원의 협력 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25조(생활지도 불응 시 조치)

원장과 교원은 유아 또는 보호자가 생활지도에 불응하여 의도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경우,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5조에 따른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보아 이에 대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26조(이의제기)

- ① 보호자는 원장과 교원의 생활지도가 부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원장에게 14일 이내에 의를 제기할 수 있다.
- ② 원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에 대해 14일 이내에 답변하여야 한다. 다만 동일한 내용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2회 이상 답변하고 그 이후에는 답변을 거부할 수 있다.

제27조(기타) 그 밖에 생활지도가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을 따른다.

부 칙

본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